

동남아 과실 왜 못들어오나

— 수출입 식물검역「키·포인트」—

국립식물검역소 서울지소

소장 신 현 포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 여행 기회가 많아져서 내국인들의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해외 여행에는 아직까지도 규제사항이 많아 여행의 즐거움에 앞서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일 것이다.

여행을 비교적 자주하는 분들로부터 동남아 여행시 많이 볼 수 있는 난초묘를 사오고 싶어도 식물검역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런가하면 동남아 지역에서 들여올 수 없는 생과실을 알지못하고 휴대 반입하다가 입국과정에서 폐기당하는 일이 많은데 김포공항을 통해서만 1일 평균 4-5건이 적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959년부터 우리나라 식물 검역이 시작된 이래 4반세기가 흘렀으나 지

금까지도 이와같이 가져올 수 있는 식물을 지레 겁먹고 들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들여올 수 없는 동남아 과실을 휴대반입, 폐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때 아무리 우리나라의 농림산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당하는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갖게됨은 물론 개인적인 손실인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큰것은 물론이다.

식물검역 담국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식물검역의 필요성과 수입금지 지역 및 금지식물등을 계속 홍보하고 있으나 식물의 수입금지지역 및 금지 식물내역이 간단하지 않고 내용 자체가 식물학 및 식물보호학의 전문적인 지식없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물검역은 원래 규제하는 일부터 시작되므로 대국

민 홍보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 식물 검역에 대한 이해보다는 먼저 경원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에는 아직없는 경계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 경계 병해충이 가해할 수 있는 모든식물 (기주식물 이라고함)들은 모두 수입금지 대상이 된다.

굴광대파리를 비롯한 11종의 경계 해충과 감자암종병을 비롯한 5종의 경계병이 분포되어있는 약353개 지역 및 나라에서 들여올수 없는 식물의 가지수는, 즉 앞에 말한 경계병해충의 기주식물 종류 모두가 해당되므로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종류수 만큼이나 다양하여 한정된 지면에 모두 소개할 수 없는 형편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식물의 지하부분”또는 가지과 식물, 박과식물 등으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포공항의 수입 휴대식물 검역상황을 참고로 휴대반입이 불가능한 식물, 식물 휴대시 알아야할 사항 또는 지켜야 할 사항등, 해외 여행중에 식물검역에 관하여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식물별로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1953. 12. 8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병해충 유포와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보호협약에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가입하고 8. 15해방과 더불어 일시 중단 되었던 식물검역업무를 1959. 6. 1부터 전국 10개 세관 소

재지와 각시도에 식물검역요원을 배치하고 재개하였다. 물론 1959년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소극적인 국내방역은 실시되었다.

식물검역은 국내식물검역, 수출식물검역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자에게는 국내 식물검역이 직접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생각되므로 수출입 수출입 식물검역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수입식물 어떻게 검역하나

모든 식물은 이들 국제간에 이동시키고자 할때 미리 식물검사를 받아 위생증을 식물에 첨부하여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자 휴대품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고자 할때는 위생증이 없어도 되나 입국자의 휴대 식물중에서도 재식용 묘목 또는 종자인때에는 위생증을 첨부하는 것이 수입식물검사에 많은 도움을 주게됨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검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여행중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위생증을 발급받아 오는것이 유리하다. 수입검역은 특히 수입하는 나라의 식물자원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느 나라든지 수출검역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식물에는 검역시 금지식물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는 것이 통례이지만 수입식물 검역의 경우는 위생증이 첨부되었을 자라도 특정지역의 특정식물 및 식물의 병해충과 흙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수입금지 식물 일지라도 시험연구용으로 농수산부장관의 사전수입 허가를 받아 금지식물에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수입이 가능하다.

가. 종자는 미리 소독된 것을

종자는 무엇보다 종자 병해를 조심하여야 하므로 우선 종자로서의 요건을 갖춘것을 구하여 미리 종자에 살균제 분의소독을 하여 갖고 오는것이 좋다.

종자의 수입은 약 1주일간의 병원균 배양검사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휴대수입품으로 적은량이고 종자자체도 외형상 깨끗하고 충실하며 미리 살균제로분의 소독이 되어 있는 것은 검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자중에서 고구마속 식물 종자와 벼종자는 고구마바이러스

와 벼의 각종 병충해의 국내 침입을 막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시험 연구용으로 농수산부장관의 사전 수입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있다.

나. 묘목, 구근류는 흙을 깨끗이 떨어버려야 된다.

흙자체가 수입금지품이기 때문에 흙이 부착된 식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건 수입할 수 없다.

묘목, 구근류는 반드시 흙을 깨끗이 털고 또 물로 씻어서 보습제를 이용하여 포장을 한다.

잎, 줄기에 병반이 없고 벌레 먹은 잎과 줄기가지사이, 뿌리사이 또는 잎에 해충 또는 해충의 알이 없도록 미리 손질을 하여야 한다.

묘목, 구근류는 거의 번식 또는 재식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병해충이 묻어들어올 우려가 가장 많아 규제 사항도 많고 수입금지 대상 식물도 많다.

아시아주의 인도, 필리핀, 타이 등 6개 나라와 남북미의 미국을 비롯한 7개 나라등 감귤 뿌리 선충이 분포되어있는 16개 나라에서는 모든 식물의 지하부

분을 수입할 수 없다.

(사과, 배, 야자과 식물등 약 30여종의 예외 식물이 있음)

또한 가지과 식물의 지하부분은 감자갈썩병, 감자황화위축병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인도, 미국, 캐나다등 17개 나라와 유럽전역에서 수입할 수 없다. 묘목, 구근류의 경우는 흙에 심어져 있는 상태 또는 흙을 붙여서 들여오다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85. 5 월말 현재 대추야자묘목의 14건이 휴대수입중 폐기된 실적이 있다.

다. 동남아산 과실은 수입금지

온대지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는 열대과일이 희귀하므로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아서 모처럼 동남아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값싸고 맛있는 열대과실을 선물로 사오다 김포공항의 입국 검사장내에서 폐기를 당하는 일이 많다. '85. 5 월말 현재 421건에 약 5,000kg이 휴대수입중 폐기된 실적이 있다.

동남아 전지역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약 80여개 나라에는 각종 과실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지중해 광대파리, 굴광대파리 또는 외파리가 각각 분포되어 있

는데 이들 과실파리는 약 200여종의 생과실속에 알을 낳아 과일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므로 이들 파리의 국내침입을 막고자 이들 파리 오염지역의 생과실과 과채류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파인애플, 푸른바나나(미숙과)코코넛야자는 과피나과육이 단단하여 이들 파리가 산란할 수 없으므로 수입이 가능한 생과실들이다.

중공, 대만, 일본지역에는 사과나 무속 식물과 산사나무속 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주 애기 잎말이 나방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사과, 능금, 산사등과 같은 사과나무속과 산사나무속 식물의 생과실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인도, 중공등을 포함한 일부와 유럽, 아프리카 전지역 북미의 캐나다, 미국, 남미와 오세아니아의 일부지역등 약 80여 나라에는 코드린 나방이 가래과 식물과 장미과 식물의 과실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호도, 가래,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자두, 양벚등 가래과 식물과 장미과 식물의 과실 또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라. 기 타

박과식물의 생경엽은 외파리

때문에, 가지과 식물의 생경염은 감자 갈썬병 때문에, 엉겅퀴 속 식물의 양배추 및 후추의 생경염은 콜로라도 잎벌레때문에 이들 해충이 오염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출식물 어떻게 검역하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식물의 검사는 국제식물 보호 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위생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병해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수출 상대국에서도 자기나라에 들어오는 식물 병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수입 식물 검사와 같은 유형의 검역을 실시하므로 수출 식물검역시에는 수출 상대국의 수입 조건에 충족하도록 검사를 실시한다.

가. 호주가 가장 까다로워

세계적으로 수입 식물 검사가 제일 까다로운 나라는 호주로서 짚제품 목재제품은 물론 심지어 이산화물에 대하여도 미리 MB 혼중 소독을 실시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 일본이 까다로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 일

합동 군사훈련시 일본에 상륙하는 각종 장비에 붙어있는 다른 지역의 흙을 물로 일일이 닦아낸후에야 상륙이 허용된다.

해외교포 및 해외파견 기술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채소종자, 묘목류, 한약재 및 기타 호박 말린것, 고사리, 말린 고구마순, 말린도라지 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교포들이 직접 파종하여 부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종자가 중동지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미지역 및 유럽지역에 적은 양이지만 수출이 되고 있다.

종자를 수출할때도 수입할 때와 같이 건전한 종자를 잘 정선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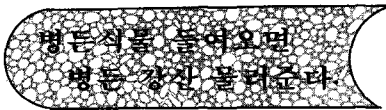
**나. 종자는 수출전
분의소독해야**

특히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종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살균제 분의 소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전 분의 소독을 하여 갖고 나가는 것이 좋다.

묘목, 구근류는 우선 병해충이 감염되지 않은 것을 구하여 흙을 깨끗이 씻어낸 후 이끼와 같은 모습재로 뿌리부분을 포장

하여 수출검사를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 사과, 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품목이므로 선물용으로 많이 갖고 나가는데 특히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에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병반이 없는 깨끗한 과실을 골라 꼭지와 배꼽부분을 특히 솔질하여 왕겨나 벧짚 부스러기등을 털어내고 수출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상자에 포장할때 왕겨나 벧짚같은 방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하고 꼭 방충재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스티로폼 같은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910-1960 사이에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병해충이 약 10여종 이상 들어와 산림 및 농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해충의 경우, 흰불나방, 솔잎혹파리, 밤나무 순혹벌등 6종의 새로운 해충이, 병해의 경우 벼백엽고병, 잣나무털늑병등 6종이 들어와 피해 액수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직접간접으로 주고 있으나 한번 정착된 병해충은 도

저히 완전박멸시킬 수 없으며 대대손손 언제까지나 우리를 괴롭히는 병해충으로 오래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하나의 촌락으로 거의 일일권화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물자의 자유교역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교역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지만 식물검역 차원에서는 자유교역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게 된다. 또한 자유 교역이 가능한 식물의 품목일지라도 반드시 사전에 식물검역을 받도록 생활화하여야 하겠다.

한톨의 종자, 먹다 남은 과실, 과실껍질등 하찮은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식물병해충의 나쁜 유산을 물려주게 될수 있음을 생각할때 어찌 식물검역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병든 식물이 들어오면 병든 강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간단하고도 엄숙한 자연의 교훈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P).

〈수입금지 지역 및 식물은 다음 도표를 참조바람〉

수입금지의 지역 및 식물

금 지 식 물	금 지 지 역	대상유해동식물
<p>1. 생과실 및 과채류. 다만 파인애플·푸른바나나 및 코코넛야자를 제외한다.</p>	<p>아시아: 중공·홍콩·인도지나반도·필리핀·브르네이·인도네시아·타이·말레이지아·버어마·인디아·파키스탄·스리랑카·유황도·유구열도·보우닌제도·터어키·시리아·레바논·요르단·이스라엘·키프로스·싱가포르·티모르·방글라데시·미그로네시아·대만 (풍강·당강·류칭중스위트오렌지·여지·아빙종맹고 및 하딩종맹고와 소로종과파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p> <p>유럽: 독일·이탈리아·스위스·스페인·포르투갈·벨기에·네덜란드·프랑스·에이레·오스트리아·그리이스 헝가리·유고슬라비아·알바니아·몰타</p> <p>아프리카: 전지역</p> <p>북아메리카: 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서인도제도·하와이제도·버어뮤다</p> <p>남아메리카: 페루·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우루구아이·브라질·파라과아이</p> <p>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오스트레일리아(바렌사중스위트 오렌지 및 와싱턴중스위트오렌지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제외한다)</p>	<p>지중해광대파리 · 굴광대파리 · 외파리</p>
<p>2. 가래나무과식물(호도, 가래등)의 열매 및 장미과 식물(사과, 배, 복숭아, 살구, 자두, 양벚등)의 생과실</p>	<p>아시아: 중공·버어마·인디아·파키스탄·이란·요르단·시리아·터어키·아프카니탄·이라크·이스라엘·키프로스</p> <p>유럽: 전지역</p> <p>아프리카: 전지역</p> <p>북아메리카: 캐나다·미국(빙종양벚, 랫벚종양벚 및 본종 양벚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별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p> <p>남아메리카: 브라질·우루구아이·아르헨티나·칠레·페루</p> <p>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뉴우지일랜드</p>	<p>코드린 나방</p>
<p>3. 박과식물(오이, 수박, 참외, 호박 등)의 생경엽</p>	<p>아시아: 대만·홍콩·중공·유구열도·인도지나반도·필리핀·브르네이·타이·버어마·일본·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인디아·파키스탄·스리랑카·싱가포르·방글라데시</p> <p>아프리카: 케냐·탄자니아</p> <p>북아메리카: 하와이 제도</p> <p>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파푸아뉴기니·미그로네시아</p>	<p>외파리</p>
<p>4. 가지과식물(감자, 가지, 도마도, 고추, 담배등)의 다음의 것. ○생경엽 및 생과경등의 지하부</p>	<p>아시아: 인디아·레바논·이스라엘·키프로스</p> <p>유럽: 전지역(영국을 제외한다)</p> <p>아프리카: 알제리·모로코·남아프리카 공화국</p> <p>북아메리카: 미국(워싱턴·오리건·아이다호·텍사스·아칸소·미시시피·버어지니아·켄터키·테네시·엘라베마·노오드캐롤라이라·조오지아·플로리다·루이지애나주의 생과경을 제외한다)·캐나다·멕시코</p> <p>남아메리카: 에쿠아도르·페루·볼리비아·칠레·우루구아이·아르헨티나·포클랜드</p>	<p>감자갈죽병, 감자황허위축병, 감자암종병균, 감자시스트선충, 담배노균병, 콜로라도잎벌레</p>

◎ 수출입 식물검역의 「기·포인트」 ◎

○ 생경엽	아시아 : 이란 · 이라크 · 요르단 · 시리아 · 터키 아프리카 : 리비아 · 튀니지 북아메리카 : 서인도제도 · 쿠바 · 구아터말라 · 엘살바도로 남아메리카 : 브라질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담배노균병, 콜로라도잎벌레
○ 생과경	아시아 : 일본 (북해도에 한한다) 유럽 : 영국 아프리카 : 튀니지 북아메리카 : 파나마 남아메리카 : 베네주엘라 · 콜롬비아 오세아니아 : 뉴우지랜드	감자시스트선충
5. 영경귀속식물, 양배추 및 후추의 생경엽	아시아 : 터키 유럽 : 그리스 · 유고슬라비아 · 헝가리 · 체코슬로바키아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스위스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북서부르크 · 벨기에 · 네덜란드 · 독일 · 덴마크 · 영국 북아메리카 : 캐나다 · 미국 · 멕시코	콜로라도잎벌레
6. 명아주속식물의 생지하부	아시아 : 일본 (북해도에 한한다) · 레바논 · 이스라엘 · 인디아 유럽 : 전지역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헝가리를 제외한다) 북아메리카 : 캐나다 · 파나마 남아메리카 : 베네주엘라 · 콜롬비아 · 에쿠아도르 · 페루 · 볼리비아 · 칠레 ·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 뉴우지랜드	감자시스트선충
7. 고구마속식물의 경엽, 종자 및 생과근	아시아 : 유태도 · 유구열도 · 보오년제도 · 홍콩 · 중공 · 인도지나반도 · 필리핀 · 브르네이 · 타이 · 버마 · 말레이지아 · 인도네시아 · 인디아 · 파키스탄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대만 · 방글라데시 · 티모르 아프리카 : 전지역 북아메리카 : 미국 · 서인도제도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 뉴우질랜드 · 파푸아뉴기니 · 미그로네시아 · 멜라네시아 · 폴리네시아	캐미마구미, 고구마나방, 고구마바이러스병
8. 모든식물의 지하부분 단단, 다육식물의 지하부분은 제외한다 사과, 배, 포도, 호두, 장미, 철죽, 진달래, 카네이션, 제라늄, 용설란, 삼, 옷나무, 드라세나, 자주, 만년청, 양파, 우영, 마늘, 배고니아, 순무우, 퍼스닐, 딸기속 식물, 쇠귀나무속 식물, 등대풀속 식물, 벗나무속 식물, 선인장과 식물, 야자과 식물, 난과 식물, 화훼류 구근류, 양치식물, 선태식물, 이끼 식물	아시아 : 인디아 · 인도네시아 · 타이 · 말레이지아 · 파키스탄 · 필리핀 아프리카 : 이집트 북아메리카 : 미국 · 버뮤다 · 트리니다드토바코 · 자메이카 · 프에르토리코 · 온두라스 남아메리카 : 브라질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뉴우사우드웨일즈 및 퀴인즐랜드에 한한다) · 피지	감글뿌리선충
9. 사과나무속 식물 (사과, 능금 등) 및 산사나무속 식물의 생과실	중공 · 대만 · 일본	만주에기잎말이나방
10. 보리짚 및 이의 가공품과 개밀속 식물의 경엽	소련 · 이라크 · 터키 · 유럽주 전역. 북아메리카주 전역. 뉴우지랜드	해시안파리
11. 벼, 왕겨, 벧짚 및 이의 가공품	세계전지역 (일본 · 대만을 제외한다)	선충류, 기타 한국에 없는 각종의 병균 및 해충